

# 2024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일정 및 연수

웃터골초등학교

## 1)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및 연수

가. 시기 : 2023년 3월~4월

나. 대상 : 교권보호위원회 위원, 교원, 학부모, 학생

다. 내용 :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법 및 예방교육

라. 방법

### (1) 학부모

학부모총회(2023.3.20.)시 교권보호 연수, 가정통신문 발송, 교육활동보호 교육감 안내장 홈페이지 게시  
 교육활동보고 강화 대책 홍보자료 보급 및 안내 <https://more.goe.go.kr/eapc/subList/30300001643>(경기교육모아)  
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(학부모용)<https://more.goe.go.kr/eapc/subList/20000000408>(경기교육모아)

### (2) 교직원

교직원회의 시간을 이용한 연수 및 영상을 통한 개인 연수 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4A1eNM\\_uY]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4A1eNM_uY)  
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(교직원용) <https://more.goe.go.kr/eapc/subList/20000000408>(경기교육모아)

### (3) 학생

창체 및 관련교과 시간을 이용한 수업 실시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CgFtETkf3c>  
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자료 활용 교육 <https://more.goe.go.kr/eapc/subList/20000000408>(경기교육모아)  
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 가이드 교직원 안내 <https://more.goe.go.kr/eapc/subList/30300001643>(경기교육모아)

## 2) 교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스승존경·제자사랑 풍토 조성

가.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문화 만들기

### (1) 상호 인권 존중으로 학생-교원 간 상호 신뢰 구축

- 사제 간 정기적인 대화 및 상담
  - 등교 시 웃는 얼굴로 학생 맞이하기 운동 전개
- ### (2) 사제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운동 전개
- 학교, 학급 특색에 맞는 고운 인사말 나누기
  - 교사-학생 상호 존댓말 쓰기

### (3) 교사와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

- 교사와 학부모 상담시간 수시 운영
-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설계(예절교육 운영)

나. 스승 존경 행사 실시

(1) 일시 : 2024년 5월 13(월) ~ 5월 17일(금)

(2) 내용 : 스승 찾아뵙기, 선생님께 편지 쓰기 등

## <웃터골초 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안내자료>

1. 교육부 고시 제2023-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(학생 분리지도, 소지품 관리 등) 신설
2.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수정
3. 주요 내용
  - 교사는 학생의 학업 및 진로, 보건 및 안전, 인성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생활지도할 수 있음
  - 생활지도의 종류: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, 훈계, 보상 등 (체벌 금지)
  - 생활지도의 방법 '훈육'에서 수업 중 방해 행동에 대해 분리할 수 있음
  - 학교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은 분리 보관할 수 있음

[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]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	대상:수업방해행동 및 지시 불이행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,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	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 부서의 분리 포함)	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이내 분리 후 복귀	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
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	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	교무실 등 지정 장소 (상담교사가 배치될 경우에는 상담이 없을 시 상담교사를 1순위로 함.) 수업 종료 시 까지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점심시간 내20분 내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(20분) 보장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나 ① 1,2,3호와 관련하여 교사의 추후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 등 지정 장소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
기타	※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			

[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]

요건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모든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
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, 비비탄 총 등	3일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	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			